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特別市流通産業紛爭調整委員會條例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參 照)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7년 11월 14일 생활환경위원회

1. 회부안건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1997년 8월 16일

다. 의안번호: 제854호

라 상정일자: 제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생활환경위원회(97.9.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생활환경위원회(97.11.10) 질의·답변, 수정가결

3. 제안설명요지(지역경제국장: 조성두)

□ 제안이유

○ 1988년 정부의 시책에 따라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으로 입주하여 중도매업을 영위해 온 양곡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기준액이 타부류와의 형평에 맞지 않게 과다책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양곡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현행 가마로 되어 있는 양곡부류의 월간 최저거래기준을 금액으로 개정하

여 타부류와의 형평에 맞게 2,500만원(법인은 1억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령)

○ 본 조례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본 조례 제5조와 관련하여 부류별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기준이 청과나 수산부류는 2,500만원 이하인데 양곡부류는 500가마(가마/80kg)(법인은 2,000가마)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7,500만원(1가마당 15만원 기준)에 해당되어 타 부류에 비해 월등히 많이 책정되어 있으며, 거래단위도 청과나 수산부류 등은 금액단위인데 비해 양곡부류는 물량 단위로 형평이 맞지 않고, 이같은 물량은 양곡부류 중도매인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500가마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타부류와 동일하게 2,500만원 이하로 개정해야 한다는 양곡부류 중도매인들의 의견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됨.

○ 그 실례로 청과나 수산부류 등은 도매시장 이용률이 50% 이상인데 비해 양곡부류는 직거래 등으로 도매시장 이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양곡부류 중도매인들이 실제로 500가마의 거래실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아집니다.

'97상반기 중도매인들의 양곡거래 실적을 보면, 1인 월평균 미곡과 수입참깨를 합하여 314가마이며, 500가마 이상의 거래실적을 달성한 중도매인은 150명 중에서 27명에 불과하고, 그 중 17만명이 미곡을 거래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97상반기 중도매인 월평균 거래실적

(단위: 가마80kg, 백만원)

합 계		미 곡		수입참깨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314	55	246	31	68	24	1인월평균

○ 최저거래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주의, 경고,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도록

<p>되어 있는데 중도매인들이 노력해도 최저거래기준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고 제재까지 받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p> <p>○ 그러나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의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음.</p> <p>양곡도매시장의 설립취지가 도매시장 기능을 통하여 국민의 주식인 미곡을 중심으로 한 양곡부류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공영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유사도매시장의 상인에 비해 적정수준의 규모화를 기할 수 있어야 하고, 500가마(가마/80kg)를 최저거래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양곡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 백미 1가마당 판매마진이 약 1,500원 수준이므로 월간 500가마 이상 판매하여야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정한 것이며, 양곡부류의 거래에 있어서는 청과나 수산부류와 같은 거래금액에 대한 마진 개념보다는 거래물량(가마)에 대한 가마당 마진개념이 일반적 관행이기 때문에 거래물량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는 의견임.</p> <p>○ 최저거래기준을 2,500만원으로 개정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양곡도매시장의 본래의 설립취지에 배치된 도매시장의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하고, 관리공사의 경영수지 악화는 물론 중도매인들의 영세화가 우려된다는 것임.</p> <p>○ 그 이유로는 양곡도매시장의 설립취지가 미곡을 중심으로 한 양곡부류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에 있는데도 수입참깨공매 참여만으로도 월간 거래실적 유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점포 및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사용료를 내지 않는 수입참깨 거래에만 치중하게 될 것임.</p> <p>○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측의 견해가 서로 달라 합일점을 찾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중도매인들의 생계유지 및 보호차원과 도매시장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방향과 관리공사의 경영수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와 신</p>	<p>중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p> <p>5. 질의 및 답변: 생략</p> <p>6. 수정안 요지(수정동의안 제안자: 김성호 의원)</p> <p>○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제1호 양곡부류는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양곡거래단위는 물량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기준 2,500만원(법인은 1억원)을 400가마/80kg(법인은 2,000가마/80kg)으로 수정하고자 함.</p> <p>7. 심사결과: 수정가결(채석 14명, 만장일치)</p> <hr/> <p>서울특별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p> <p>1997년 11월 14일 생활환경위원회</p> <p>1. 회부안건</p> <p>○ 서울특별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p> <p>2. 심사경과</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7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장</p> <p>나. 회부일자: 1997년 10월 25일</p> <p>다. 의안번호: 제913호</p> <p>라. 상정일자: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생활환경위원회(97.11.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원안가결</p> <p>3. 제안설명요지(지역경제국장: 조성두)</p> <p>□ 제안이유</p> <p>가. 1997.7.1.부터 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와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는 폐지하고,</p> <p>나. 새로이 제정·시행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소매점포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 주요골자</p> <p>가.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설자</p>
---	---